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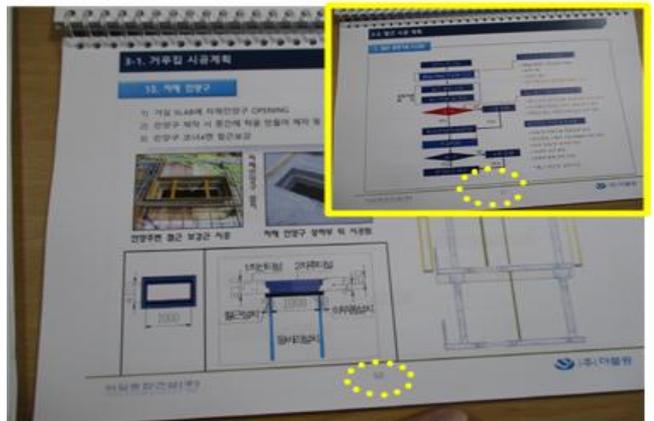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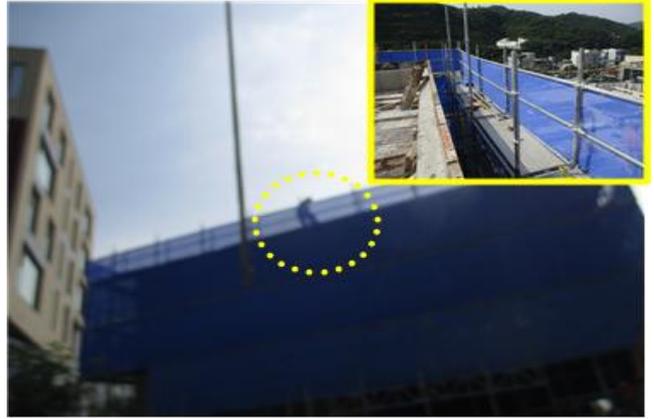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내부벽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자들 중 일부가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이며  
 - E/L Pit, 외부비계 등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는 곳이 상존해 있고 높이가 높으니 안전대착용 및 안전대고리 체결 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작업하도록 교육관리 요함.

- 해체계획이 미수립되어 해체시 추락/낙하 재해 등 재해위험의 관리가 부족하니 보완 요함.

- 옥상에서 비계로 안전하게 이동할 통로의 설치 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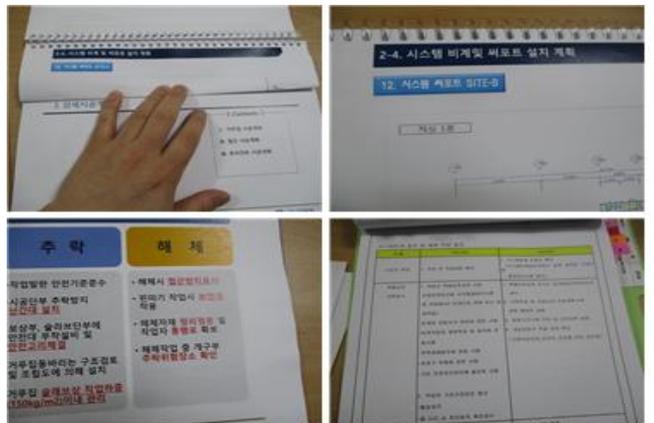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가설비계 해체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

- 상부난간해체, 내측난간 미설치 및 스틸커튼월 설치등으로 인한 벽고정시설의 해체 위험, 스틸커튼월로 인한 벽체와 비계의 간격이 넓은 등 추락재해 위험이 높으니 작업시 안전대착용,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 요함.



- 건물내부 비계는 전도 및 붕괴재해 등의 위험이 높으니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항목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해체 요함.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EL Pit, 계단부 난간옆 등 자재 적치된 곳은 불안정한 행동시 추락재해가 유발될 수 있으니 이격하여 적치 요함.  
 - EL Pit 구간 난간이 완전하게 막아지지 않은 곳 보완 요함.  
 - 건물내부 비계는 전도 및 붕괴재해 등의 위험이 높으니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항목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해체 요함.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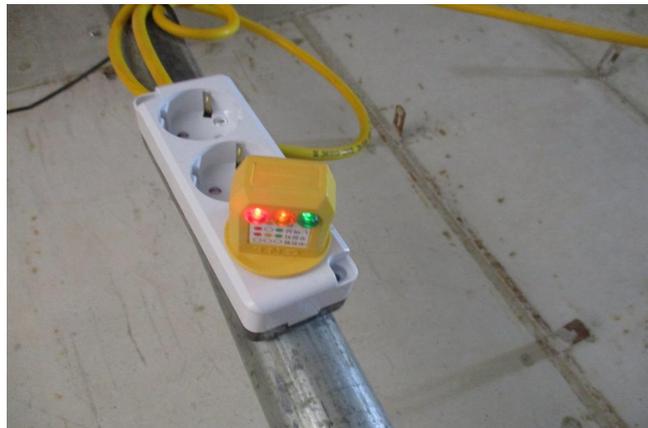
○ 시공계획 및 승인(건축부)

- 스틸커튼월, 유리 등 양중 및 작업시 추락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계속 진행예정이며
- 계획서의 내용이 양중장비, 양중방법, 정격충하중, 각 자재의 분류, 작업방법 등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보완 요함.
- 특히 양중방법(원치, 크레인, 고소작업차)에 따른 각각의 안전작업방법, 안전시설을 면밀하게 검토 요함.
- 작업자들의 상하동시작업, 신신호수 배치,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고리 체결 등 수시 확인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미접지된 전선이 있으니 가설전선은 상시 확인하여 관리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82 감전-003(가설전선)



○ 품질관리(건축부)

- 스틸커튼월의 지지부가 연속이 되지 않을 때 시공방법에 관한 상세도 처리방법 등을 도면과 계획 등에 명시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